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뚜껑 상부에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기도록 하는 한편,

정화조로 인한 악취의 저감을 위하여 배수설비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정화조의 범위를 1일 처리대상 인원 1천명 이상인 정화조에서 1일 처리대상 인원 2백명 이상인 정화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9월 13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 기 권

●대통령령 제27497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의3(중전의 제8조의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8조의2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청년 실업이 심화되고 취업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청년 미취업자 일자리 창출사업,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 등 정부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뿐만 아니라 30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도 그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9월 13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 소관)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7498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중요규제의 판단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로 한다.

1.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2. 규제를 받는 사람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인 규제
3.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4. 국제기준에 비추어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5.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6. 이해관계인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7. 중소기업영향평가·경쟁영향평가·기술영향평가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규제
8.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② 위원회는 심사를 요청받은 규제가 제1항에 따른 중요규제 판단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이해관계인 간의 이견이 없으면서 다른 규제대안이 없는 경우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민안전처장관·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